#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 相續 - 北韓·中國에 있어서 妻의 相續分을 中心으로 -

이 혀 석\*

#### - 〈目 次〉 -

- I. 序言
- II. 社會主義 家族法의 發展過程과 基本原則
- 1. 發展過程
- Ⅲ. 社會主義國家의 家族法上 妻의 相續分
- 1 要件

- Ⅳ.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 妻의 相續分의 主要 特徵 및 比較
  - 1. 北韓
  - 2. 中國
- V. 結語

# I. 序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체제를 택하여, 그리고 그 외의 소수의 국가는 사회주의체제를 택하여 지금껏 운영해오고 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 온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 사회경제적 체제가 서로 다르다. 즉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형평을 추구하는 이념으로서 대표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이 이 체제를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가치를 기초로 하는 국가들이 현존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 내에서는 이러한 상이한 각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역시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에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대표국가인 북한과 중국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념이 발현된 제

<sup>\*</sup> 대진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법학박사.

도 중에서 "妻의 相續分"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상이점 및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과 중국, 두 국가의 가족법이 각 각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가족법을 규정함에 있어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는 사회주의국가에 서는 어떠한 원칙을 기초로 두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妻의 相續分의 일반적인 내용을 본 후, 그 고유의 특징적인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각 목차의 서두부분에 우리나라의 해당내용도 첨가하도록 하겠다.

# Ⅱ 社會主義 家族法의 發展過程과 基本原則

#### 1. 發展過程

현재의 한국민법전은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11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현행민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근대적 민법이 시행되었다. 즉 1911년 制令 제7호로 朝鮮民事令이 제정되어 이 법률에서 당시의 일본민법을 한국의 당시의 현행법으로 의용을 하여 한국에서 근대적인 자본주의 민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1911년부터 근대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초하는 민법이 시행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개인을 단체보다 더 존중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이성의 자유로운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민법이 한국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sup>1)</sup>.

한편 상속법은 재산법과 달리 朝鮮民事令 제11조에서 "민법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항에 관해서는 조선인의 관습에 의한 다"고 하여 1911년 당시 상속법은 朝鮮朝의 전통적인 상속법제에 따르게 되었다<sup>2)</sup>. 그러나 점차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상속법도 개인주의사상에 입각한 평등·자유사상에 영향을 받아 장자우선·남자우선인 전통적 법체계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렇듯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은 자유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몇 차례 가족법을 개정하여

<sup>1)</sup> 김상용, "한국, 중국 북한민법의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의 비교",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통권 제19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년 6월. 30면.

<sup>2)</sup> 정동호, "상속분의 변천에 비추어 본 한국가족법", 법학논총 제18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년 12월, 34면.

왔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국가로서 한국과 기본적인 사상을 달리하는 북한과 중국의 가족 법은 어떻게 발전하여 바뀌어져 왔는지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北韓

북한에서는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朝鮮民事令 제11조가 적용되어 친족상속법 분야에서는 전래되어 온 한국의 오랜 관습법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공산정권수립 이후 북한은 기존의 사회질서는 모두 혁명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부정 하고 사회주의혁명에 맞는 법질서를 한꺼번에 이루고자 소련법이론을 그대로 이식하였다.

이후 북한은 1990년에 가족법과 분리하여 재산법으로만 북한민법을 제정하여 1993년과 1999년 두 번에 걸쳐 개정을 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결국 북한민법은 구소련의 사회주의 민법을 계수하여 철저히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의 등가보상적 재산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재산법과 분리된 가족법은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되어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가족법은 재산법과는 달리 사회주의 가족법의 모델이라 할수 있는 소련법과는 약간의 다른 모습을 가지며 고유의 특색4)이 있다.

#### (2) 中國

중국에서는 공산화 이후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기초한 민법전의 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 첫째의 작업이 바로 1954년에 시작하여 1956년에 마련한 民法典草案이었다. 이 民法典草案은 1922년의 소련민법전을 기초로 하여 마련된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의 民法典草案이었다. 특히 이 民法典草案에서는 공유재산을 특별히 보호하는 원칙에 입각해 있었다.

그 후 다시 민법전 제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1962년에 시작하여 1964년에 역시 사회 주의 계획경제하에서의 民法典草案을 마련하였다<sup>5)</sup>.

그러나 1978년에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979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용주의노선을 표 방하는 신경제체제를 취함으로써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에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되어 1985년 4월 10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民法典草案의 재산상속권편을 기초로 한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을 채택·공포하여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상속법은 대체로 사회주의법의 원형을 따르면

<sup>3)</sup> 김상용, 위의 논문, 36면,

<sup>4)</sup> 대표적인 예로 사회주의법의 일반적인 경향은 상속법을 재산취득의 한 형식으로 보아 그것을 민법 속에 담는데 비해 북한은 상속법을 「가족법」속에 담고 있다.

<sup>5)</sup> 김상용, 앞의 논문, 35면,

서 거기에 중국 특유의 습속과 전통을 강력하게 가미6)하고 있다7).

#### 2. 基本原則

한국민법의 기본원칙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성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이성과 이기심에 기한 활동에 의하여 사회전체의 富가 증대되는데 있다. 그리하여 한국민법의 기본적인 사상적 기초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터잡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원칙으로서 재산법에서는 사유재산권 보장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sup>8)</sup>.

가족법에서도 이를 기초로 규정이 되고 있다. 즉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남녀평등의 실현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는 이하에서 살펴보는 사회주의국가에서처럼 정치적 이념의 하나로서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사상에서 저절로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하고 있는 사회주의 민법 하에서의 가족법은 각각 어떠한 원칙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다.

# (1) 北韓

북한은 사회의 기초생활단위인 가정의 공고화를 통하여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을 더 잘 발전시키고, 가족관계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와 봉건적 인습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족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북한가족법 제1조는 가족법의 사명이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전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가족법이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기본원칙이 있다. 초기 가족법 교과서에서는 가족법의 기본원칙으로 남녀평등의 원칙, 모성과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원칙, 일부일처제 원칙, 자녀의 이익만을 위한 친권실현의 원칙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 자녀의 이익만을 위한 친권실현의 원칙을 대신하여 집단주의의 구현을 강조하는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가정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원칙이 가족법의 기본원칙으로 등장하였다<sup>9)</sup>.

<sup>6)</sup> 대표적인 예로 상속대상 중 '林木'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sup>7)</sup> 최달곤, ,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402면.

<sup>8)</sup> 김상용, 위의 논문, 38-39면.

<sup>9)</sup> 다만 이로써 자녀의 이익만을 위한 친권실현의 원칙이 가족법의 기본원칙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고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원칙에 내포되어 있을 뿐이다. 북한가족법 제27조가 친권의 의무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평등의 원칙은 단순히 가족법의 기본원칙이라기보다 북한이 기본의 전통적 대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혁명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혁명과 업이고 헌법상의 원칙이었다. 이는 북한이 가족법 관련 최초의 법령으로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한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가정에서의 남녀평등은 정치·경제·문화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남녀평등의 원칙은 가족법의 기본원칙이 된다. 가족법상의 모든 제도와 원칙들은모두 남녀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바, 이하에서 설명하는 일부일처제 원칙이나모성과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원칙도 남녀평등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모성과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원칙은 남녀평등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제헌헌법 이 래 헌법상 명시되어온 원칙이다. 국가가 모성과 아동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기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 교양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이룩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sup>10)</sup>.

북한은 결혼을 일부일처제에 입각한 진정으로 自願的인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고,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제7조에서 조선시대이래 우리 사회에 존재하여온 축첩제도를 금지하고 형법에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일부다처제를 남녀의 불평등에 기초하여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그 사회경제적 근원을 두고 있는 남녀불평등의 노골적 표현이라고 비판한다.

자녀의 이익만을 위한 친권 실현의 원칙은 북한가족법에서도 요구된다. 오늘날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각국의 입법례에서 친권은 자녀에 대한 지배권도,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도 아니며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교양할 국가적·사회적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연한 원칙을 북한이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자녀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인간으로 양육하는데 친권의 목적을 두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가족법의 기본원칙으로 등장한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가정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원칙은 집단주의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정은 사회의 개별적 생활단위이며, 개별적 생활단위의 전체가 하나의 대가정인 사회를 형성하므로 가정 또는 가정성원들 개인의 이익은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으로부터 생겨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은 사회의 세포를 이루는 개개 가정성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보장된

<sup>10)</sup> 그 구체적 정책으로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등이 있다.

다고 한다. 따라서 결혼과 가정형성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일을 더 잘 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가족법에는 가정성원들의 요구와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요구와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된다<sup>11)</sup>.

#### (2) 中國

중국 가족법의 기본원칙으로 혼인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적 혼인제도, 부인·아동·노인의 합법적 권익보호, 계획출산 등이 있다. 이 원칙들의 대개는 구법의 것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두 개는 개정법에서 채택된 것인데, 바로 노인의 보호와 계획출산이다. 전자의 것은 위의 북한과 동일하거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후자 두 개의 내용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노인보호의 측면을 보면, 子도 親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국가부양의 폭을 좁히고 가족부양의 폭을 넓혀 가고 있는 사회주의 법제에서 보면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혼인법 신법 제2조 제2항의 "…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사회주의 가족의 강화라는 일반적인 뜻을 넘어선 보다 절실한 필요성에서 나왔다고 볼수 있다. 즉 중국사회는 비록 사회주의화 했다 하더라도 전통적 가족주의를 일시에 펼쳐낼수 없고 오히려 가족성원 사이에는 '尊老愛幼하고 相互扶助'하는 것이 전통적인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은 응당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중국사회의 전통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12).

다음으로 계획출산은 정권수립 후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국민경제의 절박성<sup>13)</sup>에 기인한다.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함으로써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려는 경제제일주의를 중심과제로 채택하였으며 가족법도 예외는 아니어서 계획출산을 혼인법에 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sup>14)</sup>

상속법의 기본원칙을 보면 크게 공민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상속보장, 남녀의 평등한 상속권, 권리·의무의 일치, 한정상속, 가족의 강화를 위한 養老育幼, 상호이해, 互讓화목단결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속법의 기본원칙들은 중국사회 특유의 연혁적인 요소들을 많이 규정화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가족법이 일반적으로 사회의 전통과 습속을 크게 반영하지

<sup>11)</sup> 법원행정처, 북한의 가족법, 1998, 67-71면,

<sup>12)</sup> 최달곤1 , 앞의 책, 386-387면.

<sup>13)</sup> 중국은 인구가 많으면 교육비가 많이 들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워져 국가사회적 부담만 늘게할 뿐이므로 현대화작업에 역행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sup>14)</sup> 加藤美穗子. (詳解) 中國婚姻·離婚法. 日本加除出版社. 2002. 48-51頁 참조.

않는 점에 비추어 중국 상속법의 특징을 이룬다15).

# Ⅲ 社會主義國家의 家族法上 妻의 相續分

#### 1. 要件

한국민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법률상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 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권을 잃는다<sup>16)</sup>. 또한 일반적인 상속결격사유(한국민법 제 1004조)가 없어야 한다.

#### (1) 北韓

북한 가족법상 妻가 생존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북한은 철저한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妻는 결혼등록의 절차를 마친 경우라야 한다. 북한가족법 제11조에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통해 이 내용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법절차를 거친 재판소의 이혼판결이 있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생존배우자로서 상속받을 수 없다<sup>17)</sup>.

둘째,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피상속인을 몹시 학대했거나, 피상속인을 의식적으로 돌보지 아니했거나, 상속조건을 고의로 만든 자(북한가족법 제48조)가 아니어야 한다. 북한의 가족법이론에 의하면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지정되어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sup>18)</sup>.

#### (2) 中國

중국의 경우에는 첫째, 혼인등기를 하여 혼인증명서를 취득하였어야 한다(중국혼인법 제7조). 혼인등기는 부부관계확정의 전제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혼인관계는 국가의 확인을 얻지 못하여 성립되지 못하며, 국가의 법률상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sup>19)</sup>. 혼인등기제

<sup>15)</sup> 법원행정처, 앞의 책, 254-255면,

<sup>16)</sup> 김주수, 친족상속법[제6전정판], 법문사, 2003, 524-526면,

<sup>17)</sup> 최달곤, , 북한혼인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 24-42면 참조.

<sup>18)</sup> 법무부, 동아시아 가족법제, 1996, 330면.

<sup>19)</sup> 陳宇澄, 中國家族法の研究, 信山社, 1994, 119-122頁 참조.

도의 실행은 남녀당사자가 결혼조건에 합치하는가를 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남녀 쌍방의 혼인관계가 국가의 승인과 보호를 취득한 후에 행해져야 할 절차이기 때문이기도 하다<sup>20)</sup>. 그러므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인 경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의 북한과 마찬가지로 妻는 상속받을 수 없다.

둘째, 상속권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상속법 제7조는 상속권상실의 사유로서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유산을 다투기 위하여 다른 상속인을 상해한 경우,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또는 학대하여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 유언을 위조, 변조 또는 파훼하여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생존배우자인 妻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21)

이와 같이 妻가 상속인이 될 요건은 북한, 중국가족법에서 각각 그 표현을 달리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에서는 대동소이 하다.

#### 2. 內容

한국민법에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한국민법 제1009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sup>22)</sup>.

<sup>20)</sup> 법무부, 위의 책, 220면,

<sup>21)</sup> 법원행정처, 앞의 책, 275-276면.

<sup>22) 1960. 1. 1 ~ 1978. 12. 31 (</sup>사망일 기준) 한국민법 제1009조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sup>1979. 1. 1 ~ 1990. 12. 31</sup> 한국민법 제1009조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다.

현행 한국민법 제1009조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 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1) 北韓

북한 가족법상에서 상속순위는 제1순위는 배우자, 자녀 및 부모이다(북한가족법 제46조 제1항). 제2순위는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며(동조 제2항), 제3순위는 그 밖의 근친자 (동조 제3항)이다. 그리고 북한가족법 제47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다"고 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몫의 균분을 규정한다<sup>23)</sup>. 이에 따르면 배우자는 제1순위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자녀, 부모와 균분하여 재산을 상속받게된다.

#### (2) 中國

중국 상속법에서 상속순위는 제1순위는 배우자, 자, 부모이고, 제2순위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동순위자 사이의 공동상속분은 일반적으로 균등하다(중국 상속법 제13조 제1항)<sup>24)</sup>. 그러나 부양능력이나 부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산 분배시 분배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분배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협의·동의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불균등할 수도 있어(동조 제2항) 상속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sup>25)</sup>.

# Ⅳ.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 妻의 相續分의 主要 特徵 및 比較

# 1. 北韓

북한 가족법에 있어서 妻의 상속분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다른 공동상속인 과 균분상속을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따르는 다른 국가들에서의 妻의 상속분은 균분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 보다 오히려 상당히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공동상속인 보다 5할을 가산하여 妻에게 준다(한국민법 제1009조 제2항)<sup>26)</sup>. 또 영국은 비율로 정하지 않고 확정금액 £125,000을 妻에게 주며<sup>27)</sup>, 확정금액을 제외하고 재산이 남아있으면 그 잔여재산의 1/2을 생애권(평생권, life interest)이라는 형태로 妻가 갖게 된다<sup>28)</sup>.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는 상속재산의 1/2이 우선적으로 妻에게 가게

<sup>23)</sup> 북한연구소, 북한가족법과 가정실태, 은창문화사, 1991, 85-86면,

<sup>24)</sup> 김숙자, "중국의 상속법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254호, 대한변호사협회, 1997년 10월, 71면.

<sup>25)</sup> 黑木三郎監修, 世界の家族法, 敬文堂, 1991, 222-223頁.

<sup>26)</sup> 김주수, 앞의 책, 568면.

<sup>27)</sup> 공동상속인이 직계비속인 경우 £125.000을, 부모나 방계혈족인 경우 £200.000을 받는다.

되며 나머지 1/2을 가지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게 된다<sup>29)</sup>. 오스트리아는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3분의 1로 정해 놓아 언뜻 적은 것 같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 배우자에게는 사망자와 함께 생활했던 집에 계속 머물 권리와 그 집안의 모든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스웨덴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부모의 재산을 아예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해 생존 배우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개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妻에게 주고 있고 또 그러한 추세에 맞추고 있어 북한의 경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과 여러 자본주의 국가가 서로 그 근본가치체계를 달리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즉 북한의 균분상속은 생존배우자로서의 妻 개인의 사정, 여건보다는 사회주의체제의 형평의 이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제도라고 설명될 수 있겠다.

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데, 이는 결국 핵가족화의 심화와 여성권익의 신장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심화되어 오늘날에는 '가정의 해체'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쓰일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에서 現시대의 자본주의국가 구성원들은 '가정의 유지·존속'이라는 가치보다 개인의 이해를 우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무시되었던 여성의 권익이 점차 증대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러한 여러 사회현상의 영향으로 妻의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의 부부생활, 장래의 생존배우자로서의 생활 등妻 개인의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게 되어 현재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妻와 함께 제1순위로 상속받는 상속인은 구와 부모로 된다. 보통 우리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제1순위의 상속인은 대개 배우자와 子이고 직계존속인 부모는 2순위로 상속받는다<sup>30)</sup>. 만약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국가에서 같은 양의 재산이 상속된다고가정했을 때 두 국가 모두 균분상속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생존배우자인 妻가 1/2을 상속받음에 비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妻는 子, 부모와 함께 상속을 받게되어 결국 상속재산의 1/3을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하에서 妻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자본주의하에서 보다 훨씬 줄어든다. 더구나 실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妻에 대한 상속분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왜 부모가 배우자, 子와 함께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로는 북한은 상속제도를 통해 혈연상속의 원칙을 실현한다기 보

<sup>28)</sup> 이화숙,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 2000, 267-268면.

<sup>29)</sup> 조미경, "독일법상의 배우자상속분", 가족법연구 제14호, 한국가족법학회, 2000년 12월, 258면,

<sup>30)</sup> 대표적으로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이 그러하다.

다 가족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결국 가족부양의 강조·강화를 통해 북한 가족법의 핵심인 집단주의 구현을 위한 가정의 공고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妻가 받는 상속재산은 아주 미미하다. 북한의 개인소유재산은 가정재산과 순수개인 재산으로 나누어진다. 가정재산은 가정생활기간에 개별적 가정성원이 자기의 이름으로 소득한 금전과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이것은 가정의 물질적 생활의 원천이어서 가정성원 전체의 소유가 되어 결코 상속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순수개인재산은 공민이 그가정의 성원으로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예를 들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가정성원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용도에만 쓰이던 물건,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자기 명의로 받은 선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에서는 후자의 순수개인재산³¹)만이 상속의 대상으로 된다.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미미한 상속재산을 더욱 축소시키게 되는 것이다³²). 결국 생존배우자인 妻의 입장에서는 妻 개인에게 돌아오는 재산이 지극히 적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다른 상속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의 상속은 개인위주라기 보다는 오히려 가정단위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 2. 中國

위에서 언급한 북한 가족법의 특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내용은 중국의 가족법에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므로 이하에서는 그 외의 특징적인 사항만을 살펴보겠다.

중국에서는 유산분할의 시기, 방법 및 상속분의 확정은 상속인들의 협의에 달려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중국 상속법 제15조 후단). 이 규정을 통해 유산에 대한 각자의 상속분은 피상속인 사망시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협의가 성립한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만 균분상속이 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결국 협의에 의하여 행해지는 실제상속분은 법정 상속분과 다를 수 있고, 법정상속분은 명목상의 것에 그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상속분에 관한 확정은 당사자간의 협의내용이 우선시된다. 또한 협의 불성립시에 한해서 법정상속분에 따르는 것도 중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

<sup>31)</sup>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 상속 또는 중여받은 재산 /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긴 재산 / 주택 / 가정용품, 문화용품 및 생활용품 / 승용차와 같은 기재.

<sup>32)</sup> 최달곤, . 앞의 책, 32면.

나 이 사항이 중국에서 유독 특징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중국 고유의 사회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33)</sup>. 즉 이에 관하여 「상속법 제안설명」은 "일부의 복잡한 실제상황에 적응하여, 비교적 실행가능하며 탄력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고 있는데<sup>34)</sup>, 그 '실제상황'이란 지방적 관습이라든가 남녀불평 등의 관행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생존배우자인 妻는 실제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상이한, 법에서 규정한 균 분상속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특히 옛 관습이 상당히 잔존해 있는 촌락에 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 V. 結語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상속에 있어서도 그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위에서 상술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妻의 상속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두 국가 모두 균분상속을 기본으로 하고 子와 父母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함으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또 가정의 공고화를 위한 부양의 수단으로서 상속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유의 관습과 사회현황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법규정이 명목상의 것으로 되기 쉬워 같은 체제를 갖춘 북한보다 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았다.

상속은 개인소유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주의국가가 그들의 이념에 충실하고자하는 한 처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현대 상속의 발전방향과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하여 자본의 개인소유의 인정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으므로 앞으로 처의 상속분도 그 모습이 바뀔 여지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상속을 부양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시켜 이해한다는 점 자체는 부양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때에 참고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올 초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우리민법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5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를 기존 방식대로 나누도록 하는 상속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키로

<sup>33)</sup> 김은아, "전근대 중국의 가족공산제와 가부장의 기능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2호, 한양법학 회, 2002년 12월, 254면 참조.

<sup>34)</sup> 최달곤, 앞의 책, 406-407면,

했다. 현행 상속분 규정은 '피상속인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는 두 자녀와 1.5대1대1 비율로 남편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아내가 먼저 재산의 50%를 갖게 되고 나머지 50% 재산을 두고 기존 방식대로 1.5대1대1로 나누어 아내가 71.4%, 두 자녀가 14.3%씩 분배 받는다<sup>35)</sup>.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에 따라 생존배우자가 홀로 살아가야 할 날이 늘어난 반면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희박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기댈 곳은 상속재산과 정부의 지원이 대부분이다. 그런데우리 상속법은 자녀가 많을수록 생존 배우자에 돌아가는 재산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반면,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혼을 했다면, 전업주부라도 자녀수와 상관 없이 재산분할을 통하여 남편 재산의 절반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사별을 하면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하여도 이혼하는 것보다 상속에 불리해지는 모순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상속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 생존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선취분'은 상속이라는 개념보다는 '재산분할'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개정위원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느지막이 재혼한 아내한테도 재산의 절반을 떼줘야 하느냐, 자식들이 부모의 재혼을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선취분 대상 재산을 '혼인 중에 증가한 재산'이라고 규정하여, 재혼을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증가한 것이 없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혼인기간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선취분 대상 재산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가족 간에 이견이 생길 경우 구체적인 비율은 법원에서 혼인기간, 재산의 원천,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비율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배우자의 노후보장을 우선시하는 법률제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미 시행해 오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은 비율로 정하지 않고 확정금액 £125,000을 妻에게 주며, 확정금액을 제외하고 재산이 남아있으면 그 잔여재산의 1/2을 생애권(평생권, life interest)이라는 형태로 妻가 갖게 된다. 독일과 스위스는 사망자 재산의 반을 배우자가 우선 갖고, 나머지 반을 자녀들이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스트

<sup>35)</sup> 남편이 상속재산 7억원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가 2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3억원을 상속받게 되고 자녀들은 각각 2억원씩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배우자는 3억5,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상속받으며 나머지 3억5,000만원을 현행 민법과 동일하게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나눠갖게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전체 상속액은 5억원이며 자녀들은 각각 1억원씩 받을 수 있다.

리아는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3분의 1로 정해 놓아 언뜻 적은 것 같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 배우자에게는 사망자와 함께 생활했던 집에 계속 머물 권리와 그 집안의 모든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스웨덴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부모의 재산을 아예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해 생존 배우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우려의 말들이 있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21세기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양성평등과 완전한 부부평등을 향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논문투고일자: 2014.12.01 / 심사 및 수정일자: 2014. 12. 18 / 게재확정일자: 2014. 12. 30)

주제어: 사회주의국가, 배우자, 상속, 봉양, 남녀평등

#### 〈참고문헌〉

김상용, "한국, 중국 북한민법의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의 비교",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 제19호),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김숙자, "중국의 상속법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254호, 대한변호사협회, 1997.

김은아. "전근대 중국의 가족공산제와 가부장의 기능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2호. 한양법학회. 2002.

김용한, 친족상속법[보정판], 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제6전정판], 법문사, 2003.

법무부, 동아시아 가족법제, 1996.

법원행정처, 북한의 가족법, 1998.

북한연구소, 북한가족법과 가정실태, 은창문화사, 1991,

이화숙,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 2000

정동호, "상속분의 변천에 비추어 본 한국가족법", 법학논총 제18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조미경, "독일법상의 배우자상속분", 가족법연구 제14호, 한국가족법학회, 2000.

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 북한혼인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

최종고, 북한법[증보신2판], 박영사, 2001.

加藤美穗子, (詳解) 中國婚姻·離婚法, 日本加除出版社, 2002.

滋賀秀三. 中國家族法の原理. 創文社. 1967.

陳字澄, 中國家族法の研究, 信山社, 1994.

黑木三郎監修、世界の家族法、敬文堂、1991、

⟨Abstract⟩

# Study of inheritance system in communist country with socialism

Hyun-Seok Lee\*

Capitalism is one of the social systems which now exists in most countries of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after the formal dissolution of the USSR in December 1991 and the collapse of Communist regimes. Most capitalist countries have adopted liberal democracy as a form of government in which representative democracy operates under the principles of liberalism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which are generally enshrined in law.

Whereas Socialism is a social and economic system characterised by social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co-operative management of the economy, as well as a political theory and movement that aims at the establishment of such a system. Most communist countries have adopted this system and operated their countries. North Korea and China are typical communist countries combined with socialism.

Speaking of Inheritance, North Korea and China are good examples of Inheritance system in the communist countries with socialist economic system.

This paper is going to talk about their inheritance system, particularly, regarding to the share of inheritance for wife in two representative socialist countries, North Korea and China, with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legal systems.

Both are basically following equal division of inheritance for the share of inheritance for wife as a co-inheritor with a husband and a son to realise gender equality and establish secure family system.

This is not only special but also typical legal system influenced by their own

<sup>\*</sup> Daejin University Law Professor.

customs and social atmosphere. Particularly in China, it seems to be more nominal legal system for female spouse than North Korea.

Modern society has been trying to increase heirship of wife in the family underlying premise of private possession which is far from socialist system.

Nevertheless of that principle, socialist countries have adopted private possession system partially for their economic development these days.

As far as this change goes in the socialist countries, the heirship of wife as inheritance system can be improved with possibility.

We cannot be sure of this sort of the change in socialist countries due to the difference of directing points followed by their own political line. However, we should consider the heirship of wife as inheritance system seriously in the socialist countries despite of all the unpredictable factors.

Because heirship of wife is getting linked closely with family support matter in that society. Even in socialist countries, the matter of family support is quite big issue and it can be able to associate with the change of inheritance system for them.